

홍형철 변호사 「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3」
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24-10-15)

P.169 방주 [61] 일부 내용 삭제

<기준>

[61] 역시 반의사불벌죄에서 중전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.
교특법위반(차상)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(제327조 제2호)이 선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.

<수정>

[61] 역시 반의사불벌죄에서 중전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.

P.197 표 내용 일부 수정(메모 중 1. 김갑동 나. 특가(도주차상) 결론 부분)

<기준>	후단무죄	<수정>	후단무죄	처벌불원有
	공소기각 (2호)		공소기각× - 유죄	but 음주운전O (단서 8호)

P.201 2) 공소기각 판결 선고 가부 전체 내용 수정 / 방주 [06], [07] 수정

<기준>

2)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

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. 1. 10.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(기록 제29쪽 진술조서 참조).[06]

[06]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내용부터 적시할 수 있으나, 답안 분량상 그 기재를 생략하였다.

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).[07]

[07]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므로 제327조 제6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된다.

<수정>

2) 공소기각 판결 선고 가부

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. 1. 10.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(기록 제29쪽 진술조서 참조).

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.

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해 공소기각판결(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)이 선고될 수 없고,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.[06]

[06]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은 인정되지 아니하나,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의한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이상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위반행위가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.